

2021년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세부기준 변경사항

❖ 상호협력평가기준 고시 개정* 등에 따라 이에 따른 2021년 상호협력평가 세부 평가기준 마련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75호('19.7.15.시행) 및 제2020-998호('21.1.1.시행)

1 주요 변경내용

평가분야	변경내용	근거
------	------	----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공동 도급 실적	지역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참여율	- 공사현장(시·도) 내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실적 평가 40% 이상의 경우 만점(5점)	개정고시 반영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 기존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비율' 및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평가 일원화 - 법정기일 이내 100%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대금 지급한 비율 평가 - 만점기준 상향(30%→60% 또는 50건→120건)	개정고시 반영
협력 업자 육성	전자하도급계약	만점기준 상향(50%→80%)	개정고시 반영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실적	- 가점(+5점)에서 배점(5점)으로 전환 - 건축공사업 미등록업체 등에 대한 평가점수 산정방법 보완	개정고시 반영 세부기준 변경
	교육지원	- 집체(오프라인)교육으로 이수한 경우, 우대(가중치 1.2배) ※ 코로나19 사태 발생 등 감안하여 '21년 평가시에만 한함	세부기준 변경

□ 신청서류 제출방법

전자문서 제출 (온라인 자료전송)	- 평가신청서와 세부 입증자료의 제출방법을 - (기존) 서면(종이서류) 제출에서 (변경) 전자문서로 제출(전산프로그램에서 신청내용을 입력·온라인 자료전송·제출)으로 변경 - 세부 입증자료는 전자문서(pdf 등)로 제출	개정고시 반영
-----------------------	---	---------

※ 각 평가항목별 세부 변경내용은 붙임 참조

2 평가항목 배점 변경

평 가 항 목	기 존 배 점		변 경 배 점		비 고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1. 공동도급 실적	10점	-	10점	-	
가.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 건수 비율	(5점)		(5점)		
나. 지역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참여실적	(5점)		(5점)		고시 개정
2. 하도급 실적	20점	25점	20점	25점	
가.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비율					
3. 협력업자 육성	57점	52점	57점	52점	
가. 협력업자 재무지원	42점	42점	37점	37점	고시 개정 고시 개정
(1) 하도급대금지급 및 지급시기 등 적정성	32점	32점	27점	27점	
①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10점)	(10점)	(10점)	(10점)	
② 하도급 낙찰률	(5점)	(5점)	(5점)	(5점)	
③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13점)	(13점)	(8점)	(8점)	
④ 전자하도급계약	(4점)	(4점)	(4점)	(4점)	
(2) 협력업자 재무·교육 지원	10점	10점	10점	10점	
① 재무분야	(5점)	(5점)	(5점)	(5점)	
② 교육분야	(5점)	(5점)	(5점)	(5점)	
나. 협력업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10점	5점	10점	5점	
다. 상생협의체 운영	5점	5점	5점	5점	
라. 민간공사 현장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실적			5점	5점	고시 개정
4. 신인도	13점	23점	13점	23점	
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과 관련하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3점)	(3점)	(3점)	(3점)	
나.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제재받은 실적 (감점, 없으면 기본점수)	(10점)	(20점)	(10점)	(20점)	
다. 부당내부거래,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제재받은 실적 (감점)	(-10점)	(-10점)	(-10점)	(-10점)	
라.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감점)	(-10점)	(-10점)	(-10점)	(-10점)	
5. 가점	+11점	+11점	+6점	+6점	
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실적	(+3점)	(+3점)	(+3점)	(+3점)	
나. 해외건설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실적	(+3점)	(+3점)	(+3점)	(+3점)	
다. 민간공사 현장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실적	(+5점)	(+5점)			
총 계	100점	100점	100점	100점	

산정 방법	평 가 기 준	점수
② 지역협력업자의 당년도 기성액 ① 지역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당년도 총기성액	40%이상	5
	30%~40%미만	4
	20%~30%미만	3
	15%~20%미만	2
	15%미만	0

☐ '대기업'인 건설사업자에 한하여 평가

1) '지역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당년도 총기성액' 판단기준

- 신청사가 고시개정 시행('20.1.1) 이후 체결된 공동도급공사 중 계약 당시 협력업자의 주된영업소(본사) 소재지가 해당 공사현장이 있는 시·도 내에 있는 경우, 해당 공사의 당년도 공동도급 총기성액(구성사 전체)을 합산

2) '지역협력업자의 당년도 기성액' 판단기준

- 1)에 따른 '지역 협력업자와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있는 현장에서 발생한 지역 협력업자의 당년도 기성액을 합산
-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협력업자가 전년도 및 당년도에 모두 협력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지역협력업자의 당년도 기성실적'으로 인정
 - 당년도 신규계약 체결분인 경우로서 당년도 협력업자로 등록한 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당년도 이전에 공동도급계약 체결분인 경우로서 당년도에 공동도급 기성실적이 발생한 경우

사실확인용 제출서류

- 별도 서류제출 불필요 (협회 실적신고 및 업체별 소재지 등록자료, 전문협회 등 업체별 소재지 등록자료 활용)

※ 필요시,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제출받아 확인

▶ 당년도 신청사 공동도급 기성실적 현황

공 사 명	공사 지역	신청사 의 당년도 기성액	공동도급 구성사			비 고
			회사명	계약시 소재지	당년도 기성액	
OO 공사 (계약일자 : '19. 8. 1.)	인 천 시	70억	A건설	서울시	15억	'20.9.1. 협력업자 등록, '19년 협력업자 → 협력업자 공동도급 기성실적 포함
			B건설	인천시	20억	'20.9.1. 협력업자 등록, '19년 협력업자 아님 → 협력업자 공동도급 기성실적 제외
			C건설	경기도	5억	대기업인 종합건설사업자(협력업자 아님) → 협력업자 공동도급 기성실적 제외
△△공사 (계약일자 : '19.12. 10.)	경 기 도	30억	D건설	경기도	8억	'19.12.11. 협력업자 등록, '20년 협력업자 → 협력업자 공동도급 기성실적 포함
□□공사 (계약일자 : '20. 10. 1.)	경 기 도	40억	E건설	경기도	10억	'20.9.1. 협력업자 등록 → 협력업자 공동도급 기성실적 포함 → 지역협력업자 공동도급 기성실적 포함
XX 공사 (계약일자 : '20. 5. 1.)	제 주 도	50억	F건설	제주도	50억	'20.9.1. 협력업자 등록 전년도 협력업자 아님 → 협력업자 공동도급 기성실적 제외

➡ ①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4건

②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기성실적 건수: 3건 (OO공사, △△공사, □□공사)

③ 지역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공사의 당년도 총기성액

: 50억(□□공사 신청사 40억 + 구성사 10억))

※ 고시 개정 이후('20.1.1) 계약분 반영

④ 지역 협력업자의 당년도 기성액 : 10억 (경기도 E건설)

※ 고시 개정 이후('20.1.1) 계약분 반영

▶ 평가기준에 따른 비율산정

가.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기성실적 건수 비율

- 3건^② / 4건^① = 75% ⇒ 5점

나. 지역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참여율

- 10억^④ / 50억^③ = 20% ⇒ 3점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지급
[기존 평가항목(2개) 통합 및 만점기준 상향]

구 분	산정방법	평 가 기 준	점수
가. 현금성 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 건수 비율	② 현금성 조기지급 건수 ① 신규 하도급건수	60%이상	8
		40%~60%미만	6
		20%~40%미만	4
		10%~20%미만	3
		10%미만	0
나. 현금성 결제비율이 우수한 하도급 건수 합계	현금성 조기지급 건수 합산	120건이상	8
		100건~120건미만	6
		80건~100건미만	4
		60건~80건미만	3
		60건미만	0

❑ ‘가’, ‘나’ 중 점수가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1) ‘신규 하도급 건수’의 판단기준 (기존과 동일)

- ‘협력업자의 하도급 기성실적’으로 인정된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의 당년도 하도급기성실적(액)이 있는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
- 자기공사에 대한 협력업자와의 계약건은 제외

2) ‘현금성 조기지급 건수’ 판단기준

- 1)에 따른 ‘신규 하도급 건수’ 중 관련 하도급대금 모두를 법정기일 도래 전(원도급대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하도급 기성·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59일 이내)에 100%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 하도급계약 건수
 - 종합건설사업자인 신청사가 하수급인인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협력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발주자”는 “원수급인”으로, “원도급대금”은 “하도급대금”으로, “하도급대금”은 “재하도급대금”으로 간주
- 하도급대금 모두를 발주자가 협력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도 현금성 조기지급 건수로 인정
 - 단,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수령 후 발주자·협력업자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합의한 경우 기 수령한 선급금도 14일 이내에 100% 현금성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여야 인정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의 하도급대금도 100% 현금성 결제 수단으로 조기지급하였다면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 동일하게 1건으로 인정

☞ **하도급대금 지급의 법정기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 **현금성 결제 인정범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 현금, 수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사실확인용 제출서류

- ㉠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서(붙임 참조)
- ㉡ 입금증, 통장사본, 금융기관이 확인한 거래내역표 등 원도급대금 수령내역 확인서류 (현금성 결제수단으로의 수령 여부 확인이 가능한 금융기관 확인서류)
- ㉢ 입금증, 통장사본, 금융기관이 확인한 거래내역표 등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확인서류 (현금성 결제수단으로의 수령 여부 확인이 가능한 금융기관 확인서류)
- ㉣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 ㉠,㉡,㉢,㉣을 1set로 제출

※ 단, 하도급대금직불을 동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 및 ‘(매입)세금계산서’사본으로 ㉠~㉣ 대체 가능

붙임3 전자 하도급계약 [만점기준 상향]

산정 방법	평가기준	점수
$\frac{\text{총 전자 하도급계약건수}^{2)}}{\text{총 신규 하도급건수}^{1)}}$	80%이상	4
	60%이상~80%미만	3
	40%이상~60%미만	2
	20%이상~40%미만	1
	20%미만	0

1) ‘총 신규 하도급건수’의 판단기준 (기준과 동일)

- 당년도 협력업자와 신규 하도급계약 한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

2) ‘총 전자하도급계약건수’의 판단기준

- 1)에 따른 ‘신규 하도급건수’ 중 전자문서용 인지세가 납부된 전자하도급 계약의 건수를 합산하여 산정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가 체결한 전자하도급계약 건에 대하여 구성사도 동일하게 적용

☞ 전자하도급계약

- ▷ 현행 오프라인 방식으로 처리하던 하도급계약서의 작성, 체결, 관리 등 일련의 계약업무를 공동인증서 기반의 양방향 전자서명 및 암호화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방식
- ▷ 원·하도급업체가 직접방문 없이 양사간 전자서명에 의해 전자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도 해당 하도급계약건을 조회 및 출력 가능

사실확인용 제출서류

-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포함하는 전자 하도급계약서
-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납부 확인증 (또는 자사의 인지세 납부금액 확인 서류)

☞ ㉠, ㉡을 1set로 제출

붙임4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실적 평가 [가점→배점, 실적 인정범위 확대 등 평가방식 보완]

산정 방법	평가기준	점수
$\frac{\text{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 수}^{2)}}{\text{신규 민간 건축공사 현장 수}^{1)}}$	80%이상	5
	65%이상 ~ 80%미만	4
	50%이상 ~ 65%미만	3
	35%이상 ~ 50%미만	2
	20%이상 ~ 35%미만	1
	20%미만	0

1) ‘신규 민간 건축공사 현장 수’의 판단기준 (기준과 동일)

- 당년도 신규 원도급 계약한 민간 건축공사로서 2021년 건설공사 실적신고서 협회에 제출하여 평가받은 자료에 따름(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 기준)

2)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 수’의 판단기준

- 민간 건축공사 현장 중 시공과정에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을 사용한 현장수를 합산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작업발판으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실제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사용한 경우 사용년도의 실적으로 인정 (준공시까지 1회만 인정)

.....
【예시】 20.1월 공사계약(A), 21.6월 시스템비계 설치(B) 경우

▷ (A)는 2021년 상호협력평가시 평가산식 중 분모값으로 평가되고, (B)는 2021년 사용실적으로 2022년 상호협력평가시 분자값으로 평가됨
.....

- 실적신고 자료 등으로 신규 민간 건축공사 현장이 있으나,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하지 않은 현장 또는 사용실적 사실확인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평가점수는 0점 점수 부여

- 다만, 건축공사업 미보유업체 등에 대해서는 ‘민간공사 현장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실적’(5점)의 평가점수 산정이 제외되므로 아래와 같이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
-

▷ 대상업체(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① '20.12.31일 기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미보유업체
(토목·산업환경설비·조경공사업만 보유한 업체)
- ② '20.12.31일 기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하고 있으나,
당년도(2020년)에 공공공사 실적만 있는 업체

▷ 상호협력평가 점수 산정방법

- 상호협력평가점수를 95점 만점 기준(가점 제외)으로 평가 후,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종 평가점수로 산정 (소수점 이하 절사)

- ▷ (예시) '20.12.31일 기준 토목공사업을 보유한 A사의 평가점수가,
'민간공사 현장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실적'(5점) 제외하고 90점, '전자적 대
금지급시스템 활용실적'으로 +2.0점 가점을 받은 경우

- 최종 평가점수(환산) : **96점** [94점 (95점 만점 : 90점 = 100점 만점 : X) + 가점 2.0점 = 96점]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와 구성사에게 동일하게 사용현장
수로 적용

사실확인 서류

- ㉠ 현장별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에 대한 감리자(또는 발주자) 확인서
 - ㉡ 일체형 작업발판 임대계약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 ☞ ㉠, ㉡을 1set로 제출
-

구 분	산정 방법 ⁴⁾	평가기준			점수
가. 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자 업체수 비율	교육을 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²⁾ 총협력업자 업체수 ¹⁾	60%이상			5
		40%이상~60%미만			4
		20%이상~40%미만			3
		10%이상~20%미만			2
		10%미만			0
나. 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자 임직원수	지원 교육에 참가한 총 협력업자의 임직원수 ³⁾	협력업체 1,000개사 이상	협력업체 500개사 이상	협력업체 500개사 미만	5
		200인 이상	159인 이상	120인 이상	
		160~199인	120~159인	70~119인	4
		120~159인	80~119인	40~69인	3
		80~119인	40~79인	20~39인	2
		80인 미만	40인 미만	20인 미만	0

▣ ‘가’, ‘나’ 중 점수가 높은 쪽으로 선택 적용

1) ‘총협력업자 업체수’의 판단기준 (기준과 동일)

- 신청사에 등록된 건설업종별 협력업자의 총 업체수
 - 다수의 공사업종을 등록한 하나의 협력업자인 경우 업체수는 1개로 판단

2) ‘교육을 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의 판단기준 (기준과 동일)

- 다음의 ‘협력업자 교육 인정기준’에 따른 ‘일반교육(㉞)’, ‘법정윤리교육(㉟)’을 지원한 협력업자수 합산
- 하나의 협력업자 소속 임직원 여러명이 다수의 ‘일반교육’ 과정에 중복 참여 하는 경우 업체수는 1개로 인정
 - ※ (사례1) 토공사업자 ‘A건설(주)’과 포장공사업자 ‘A건설(주)’을 각각 협력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2회에 걸쳐 교육 지원한 경우, 교육지원 업체수는 1개에 해당
 - (사례2) 협력업자인 토공사업자 ‘A건설(주)’ 소속 직원 2인을 교육 지원하더라도 업체수는 1개에 해당

3) '지원 교육에 참가한 총 협력업자의 임직원수'의 판단기준 (기준과 동일)

- 다음의 '협력업자 교육 인정기준'에 따른 '일반교육(㉔)', '법정윤리교육(㉕)'을 지원한 임직원수 합산

※ (사례1) 협력업자인 토공사업자 'A건설(주)' 소속 임직원 2인에 대해 교육지원한 경우 2명에 해당

(사례2) 협력업자 토공사업자 'A건설(주)' 소속 임직원 1인을 여러번 교육지원한 경우 1명에 해당

4)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시 우대사항

- 상반기(1~8월) 교육 참여시 '2)교육을 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및 '3)지원 교육에 참가한 총 협력업자의 임직원수'에 가중치 1.2배 적용(소수점이하 절사) 하여 합산 (기준과 동일)

- 단, 집체교육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당년도에 교육 참여시 가중치 1.2배 적용 (단, 2021년 평가시에만 한함)

- 다음의 '협력업자 교육 인정기준'에 따른 '법정윤리교육(㉕)'에 신청사 소속 임직원 또는 협력업자의 임원이 참여하는 경우, 참여 인원수의 3배를 '2)교육을 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 또는 '3)지원 교육에 참가한 총 협력업자의 임직원수'에 합산

< 예시 1>

총협력업자 법인수 100개사이며, 상반기에 일반교육 과정에 참여한 협력업자수가 20개사, 상반기에 법정윤리교육에 참여한 임직원수(법인수) 10명(개사)인 경우

가. 교육에 참가한 협력업자 업체수 비율

$$= \frac{24(=20 \times 1.2배) + 36(=10 \times 1.2배 \times 3배)}{100} = 60\% \Rightarrow 5점$$

< 예시 2>

총협력업자 법인수 1000개사이며, 하반기에 일반교육 과정에 참여한 협력업자수(임직원수)가 20개사, 상반기에 법정윤리교육에 참여한 임직원수 50명인 경우에는

나. 교육에 참가한 총 협력업자의 임직원수

$$= 20명 + 180명(=50명 \times 1.2배 \times 3배) = 200명 \Rightarrow 5점$$

☞ **협력업자 교육 인정기준 (기준과 동일)**

① 교육기관 및 교육훈련 과정 (㉔, ㉕ 중 선택 가능)

구분	㉔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이하 '일반교육')	㉕ 건설업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과정 (이하 '법정윤리교육')
교육 대상	협력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	신청사의 임직원 또는 협력업자의 임원
교육 기관 및 과정	교육부 인정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고용노동부의 HRD-Net에 등록된 교육훈련과정* - 기술자 승급교육, 기사자격증 취득 교육, 정기 안전교육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은 불인정 - 「건설법」, 「하도급법」 과목을 각각 1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수료증에 교육과정명이 명기되어야 함 - 온라인과정은 고용노동부의 교육비 환급과정* 이수한 경우만 인정 * http://www.hrd.go.kr 훈련정보(기업과정) 중 “건설” 직종에서 검색	건설법 제9조의3에 따른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건설업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과정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 실시하는법정윤리교육 - 신규 건설업자의 의무교육 이수 또는 영업정지 업체가 영업정지기간을 감경받기 위해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는 불인정

② 상호협력평가 신청사가 교육실비를 부담(지원)

- 신청사가 교육기관에 실제 납부한 교육비를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하든, 협력업자를 통해 지급하든 모두 인정
- 협력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참가한 교육과정 시작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에 있어 공동수급체 차원에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가 해당 협력업자를 교육지원한 것으로 인정 가능하나, 구성사별 각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교육비 지원이 확인되어야 함

사실확인용 제출서류

- ㉠ 교육참가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택1 (재직여부 확인)
- ㉡ 교육기관등록증 사본 또는 교육기관 확인서(적정 교육기관 여부 확인)
 - 온라인 교육인 경우 교육훈련과정 인정서(HRD-Net상 화면캡처 출력물)
- ㉢ 교육기관이 발행한 교육수료증
(교육비 납부내역, 참석자, 교육내용, 수료여부 등 확인 가능 서류)
- ㉣ 신청사가 협력업자에게 직접 교육비를 지원한 경우로서 교육수료증을 통해 신청사의 교육지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사실 확인 가능 서류
(교육비 이체 통장사본 등)
- ㉤ 공동도급의 경우로서 ㉡ 또는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공동수급체가 교육지원 하였음을 입증하는 사실확인 서류

☞ ㉠,㉡,㉢,㉣,㉤을 1set로 제출

- ㉠,㉡,㉢을 갈음하여 '훈련수료자보고서' 제출 가능 (고용노동부 환급 과정을 수료한 경우 발급 가능)
 - 법정윤리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만 제출
-

□ 목 적

- 코로나19 확산, IT 기술 발달로 비대면 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업체의 제출 서류 및 신고방법 간소화를 위해 신고방식 변경

□ 신청방법

- 상호협력 신청프로그램에서 신청내용을 작성한 후, 3월15일까지 온라인 자료 전송·제출 (기존 신청서류의 서면 제출 불필요)
- 추가 세부 입증자료는 전산파일(PDF 등)로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제출
- ※ 공동인증서를 통해 프로그램 로그인, 기업정보 확인후 자료전송,

[변경된 신청방법]

구 분	제출방법		최종 접수 (~3.15일)	평가기준
	①신청서류 서면(종이) 제출	②프로그램상 자료 온라인 전송		
변경전	필요(방문, 우편)	필요	①+②	제출서류 기준
변경후	불필요	필요	②	3.15일까지 최종 온라인 전송된 자료 기준

1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과 협력관계 평가

- ❖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과 공동도급 수행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점 부여

평가항목	가점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과 공동도급 수행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한 경우	+3

-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 중 '국내시장진출 분야' 지원기업 또는 '스타분야' 지원기업과 당년도 신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동 기업과 당년도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단, 동 기업이 신청사의 협력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2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실적 평가

-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실적' 가점을 3점→5점으로 상향

산정방법	평가기준			
	대기업	가점	중소기업	가점
② 시스템 활용 민간공사 현장수 ① 전체 민간공사 현장수 ×	70%이상	+5.0	60%이상	+5.0
	60%~ 70%미만	+4.0	50%~ 60%미만	+4.0
	50%~ 60%미만	+3.0	40%~ 50%미만	+3.0
④ 시스템 활용 임금·대금지급 개월수 평균 ③ 시스템 활용 임금·대금지급 현장의 총공사개월수 평균	40%~ 50%미만	+2.0	30%~ 40%미만	+2.0
	30%~ 40%미만	+1.0	20%~ 30%미만	+1.0
	20%~ 30%미만	+0.5	10%~ 20%미만	+0.5

- ① 2021년 실적신고 자료에서 모든 '민간공사' 중 당년도에 기성실적이 발생한 현장수
※ 단, 원도급 공사금액이 5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현장, 모든 하도급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현장은 제외
- ② ①현장 중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을 지급한 현장수
- ③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공사현장별 공사개월수 (모두 누계후 평균값)
- ④ ③의 공사개월수 중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실제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이 지급된 월수 (모두 누계후 평균값)

3 재무지원 평가

◆ 재무지원 평가기준 강화 및 인정유형 다양화

재무지원 인정 유형

- ㉠ (현행)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공사대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고 **1백만원 이상** 하도급대금을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선(조기)지급한 경우
- ㉡ (현행) 전자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인지세액 중 **70%이상**을 자사가 부담한 경우로서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협력업자의 인지세 지원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 ㉢ (현행)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을 면제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협력업자별 수수료 등 지원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 ㉤ (추가) 동반성장펀드*, 상생펀드* 등을 통하거나 신청사 자금으로 협력사의 대출을 지원(대출이자 지원, 무이자 대출지원)한 경우, 이자 지원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하여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기금 집행·관리)

※ 하도급대금 외 **1백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현물(기자재 등) 지급항목은 삭제함

<불입>

[illegible]

주) 1.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는 협력업자(공동수급자, 하도급업체)의 해당 업종 및 건설업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것 (미기재 혹은 사실과 다를 경우 협력실적 불인정)